

의안번호	2203335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5.
추 계 번호	24B326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11 (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수사 협조) 신설	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과 기술적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의11 (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수사 협조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자료의 보존 및 접근 차단 기술적 조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(안 제44조의11 신설)
 -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

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- 유사한 기술지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에 따른 기술적 조치¹⁾와 관련하여 국가제공 비교식별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 및 국가제공기술 설치 희망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
 - －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용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
-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자료의 보존 및 접근 차단 기술적 조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의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자료의 보존, 기술적 조치, 행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지원 내용, 대상,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1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,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·관리적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
1.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·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
2.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·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·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
3.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·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·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·식별해야 한다.

가.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

나.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

4.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

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